

## 국문지편집위원회 규정

2016년 4월 6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기간행물은 "Journal of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를 지칭하며 이하 "국문지"로 부른다.
2. 위 원 장 1명
3. 편집이사 10명 내외

제3조 (위원장 및 편집이사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1. 위원장 및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2. 국문지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의 교체, 보안을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임기중 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하고 위촉에 의하여 취임한 위원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 임기중 각 편집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국문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기타 본 학회 학술 진흥과 국문지 발전에 관한 사업

제6조 (관리)

1.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7조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6년 4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